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45
----------	-------

발의연월일 : 2026. 6. 9.

발 의 자 : 박균택 · 이성윤 · 박 정  
박홍배 · 주철현 · 염태영  
이건태 · 박지원 · 맹성규  
박용갑 · 허 영 · 김문수  
양부남 · 김종민 · 김주영  
김동아 · 박해철 · 한민수  
황명선 · 박상혁 · 황정아  
윤후덕 · 권칠승 · 한준호  
정일영 · 전진숙 · 김승원  
장경태 · 김용민 · 김한규  
김원이 · 이광희 · 정진욱  
김기표 · 서영교 · 강경숙  
정춘생 의원(3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

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위원회는 제79조제4항에 따른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⑩ (생   략) <u>&lt;신   설&gt;</u>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위원회는 제79조제4항에 따</u> <u>른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u> <u>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명을</u> <u>생략할 수 있다.</u>